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광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028

발의연월일: 2021. 2. 9.

발 의 자:이광재·김승원·홍정민

유정주 · 김수흥 · 신정훈

민형배 · 맹성규 · 신현영

박홍근 · 임호선 · 김정호

이수진 의원(13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·중견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 기준으로 지급기한에 따라 그 지급금액중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, 이 특례는 202 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.

한편,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외상매출채권 등 현금성 결제를 2차 이하 협력사가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신용으로 금융기관에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결제방식으로서, 중소기업의 현금유동성 확보 및부도 예방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.

그러나, 2019년 기준 상생결제 도입 공공기관 66곳의 구매결제액 30 조 2,758억원 중 상생결제 방식에 따른 지급액은 9.2%인 2조 7,858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, 상생결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면서, 지급기간별 공제율을 현행 0.1~0.2%에서 0.1~0.5%로 상향하고, 최저한세 미달세액의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7조의4 및 제132조).

#### 법률 제 호

##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3 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- 1.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(제7 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× 1천분의 5
- 2.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금액 × 1천분의 3
- 3.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× 1천분의 1

제13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중 "제7조의2, 제7조의4"를 각각 "제7조의2"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의4제 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의4(상생결제 지급금액에	제7조의4(상생결제 지급금액에
대한 세액공제) ① 중소기업	대한 세액공제) ①
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	
기업(이하 제10조를 제외하고	
"중견기업"이라 한다)을 경영하	
는 내국인이 <u>2022년 12월 31일</u>	2023년 12월 31일-
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	
지급한 구매대금(제7조의2제3	
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	
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중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	
제도(이하 이 조에서 "상생결	
제제도"라 한다)를 통하여 지	
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다	
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	
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	
계산한 금액을 소득세[사업소	
득(「소득세법」 제45조제2항	
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	
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	
한다. 제122조의3, 제126조의2,	
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	
하고 이하에서 같다)에 대한	

소득세만 해당한다] 또는 법인 세에서 공제한다. 다만, 공제받 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 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 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 의 10을 한도로 한다.

- 1. 2. (생략)
-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한다.
- 1.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 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 서등(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작 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× 1천분의 2
- 2.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

   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

   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

   과 60일 이내인 금액 × 1천

   분의 1

----

- 1. · 2. (현행과 같음)
-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- 1.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 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 서등(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작 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× 1천분의 5
  - 2.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
     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
     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
     과 30일 이내인 금액 × 1천
     분의 3
  - 3.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

#### ③ (생략)

제132조(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제132조(최저한세액에 미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) ① 내국법인(제72조제1항을 적 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 다)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「법인세법」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(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 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 부하는 세액, 제100조의32에 따 른 투자·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,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 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 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 를 말한다)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 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

### 과 60일 이내인 금액 × 1천 브이 1

<u> </u>	
③ (현행과 같음)	
132조(최저한세액에	미달하는

세액에	대한	감면	등의	배제)
1				

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 우의 과세표준(이하 이 조에서 "과세표준"이라 한다)에 100분 의 17[과세표준이 100억원 초 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 의 12,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 하 부분은 100분의 10, 중소기 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(중소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, 그 다 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 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)]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(이하 "법 인세 최저한세액"이라 한다)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 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.

- 1. 2. (생략)
- 3. 제7조의2, 제7조의4, 제8조의3, 제10조(중소기업이 아닌자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

1 . 9 (처체되 가 이)
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<u>제7조의2</u>
J. <u>111112</u>

서 같다), 제12조제2항, 제12 조의3, 제12조의4, 제13조의2, 제13조의3, 제19조제1항, 제2 4조, 제25조의6, 제26조, 제29 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, 제 29조의7, 제30조의2부터 제30 조의4까지, 제31조제6항, 제3 2조제4항, 제99조의12, 제104 조의8, 제104조의14, 제104조 의15, 제104조의22, 제104조 의25, 제104조의30, 제122조 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 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

4. (생략)

② 거주자의 사업소득(제16조 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 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 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 한 소득세(가산세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 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) 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

4. (현행과 같음)
4. (현행과 같음)         ②
2
2
2
2
2
2
2
2

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 등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(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)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(이하 "소득세 최저한세액"이라 한다)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.

- 1. 2. (생략)
- 3. 제7조의2, 제7조의4, 제8조의 3제3항, 제10조, 제12조제2항, 제19조제1항, 제24조, 제25조의6,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, 제29조의7,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, 제31조제6항, 제32조제4항, 제99조의12, 제104조의8, 제104조의14, 제104조의15, 제104조의25, 제104조의30, 제122조의3, 제122조의4제1항, 제126조의3제2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

<u>.</u>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(4 0 ) 4 2 2 /
3 제7조의2
3. <u>제7조의2</u>
3. <u>제7조의2</u>

제금액	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